

# 집합제한(방역지침 의무화) 행정조치 안내문

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**2020. 12. 1. 00:00부로 대전시에 소재한 중점관리시설에 아래와 같이 1.5단계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.**

- 처분당사자 : 헌팅포차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콜라텍
- 처 분 내 용 :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의무화된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 
 <의무화된 방역지침>

관리자 · 운영자	이용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춤추기 금지(댄스 플로어 등 운영 금지), 테이블 · 룸 간에 이동 금지</li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 · 이용(의무)</li> <li>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</li> </ul> </li> <li>▶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</li> <li>▶ 이용자 마스크 착용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 작성)</li> <li>▶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▶ 영업 전/후 등 최소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 작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증상 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li>▶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li>▶ 춤추기 금지(댄스 플로어 등 운영 금지), 테이블 · 룸 간에 이동 금지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 외부 줄 서는 경우 2m(최소 1m) 간격 유지</li> <li>▶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li>▶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</li> <li>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면적 4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 <li>▶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및 환기 후 재사용(대장작성)</li> </ul>

-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2호
- 처분기간 : 2020. 12. 1.(화) 00:00 ~ 12. 14(월) 24:00까지(2주간)

- ※ 위 조치는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중점관리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.
- ※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과 방역수칙 위반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자 ·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· 조사 ·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0. 12. 1.

대전광역시



# 집합제한(방역지침 의무화) 행정조치 안내문

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**2020. 12. 1. 00:00부로 대전시에 소재한 중점관리시설에 아래와 같이 1.5단계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.**

- 처분당사자 : 50㎡ 이상의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
- 처 분 내 용 :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의무화된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

## 〈의무화된 방역지침〉

관리자·운영자	이용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(의무)</li> <li>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</li> </ul> </li> <li>* 포장·배달 등의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</li> <li>▶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</li> <li>▶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▶ 이용자 마스크 착용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 작성)</li> <li>▶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 작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증상 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li>▶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</li> <li>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</li> <li>③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</li> </ol> </li> </ul>

-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2호
- 처분기간 : 2020. 12. 1.(화) 00:00 ~ 12. 14(월) 24:00까지(2주간)

- ※ 위 조치는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중점관리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.
- ※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방역수칙 위반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자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0. 12. 1.

대전광역시



# 집합제한(방역지침 의무화) 행정조치 안내문

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**2020. 12. 1. 00:00부로 대전시에 소재한 중점관리시설에 아래와 같이 1.5단계 행정조치를 발령합니다.**

- 처분대상자 : 50㎡ 이상의 뷔페전문점
- 처분내용 :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의무화된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 
〈의무화된 방역지침〉

관리자·운영자	이용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(의무)</li> <li>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</li> <li>* 포장·배달 등의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</li> <li>▶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</li> <li>▶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▶ 이용자 마스크 착용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 작성)</li> <li>▶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 작성)</li> <li>▶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또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좌석한칸 띄워앉기, ②테이블 간 띄워앉기,</li> <li>③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증상 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li>▶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</li> <li>▶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li>▶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</li> <li>*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</li> <li>▶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/ul>

-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2호
- 처분기간 : 2020. 12. 1.(화) 00:00 ~ 12. 14(월) 24:00까지(2주간)

- ※ 위 조치는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중점관리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.
- ※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방역수칙 위반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자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0. 12. 1.

대전광역시

